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73

발의연월일: 2021. 7. 12.

발 의 자: 장혜영·강은미·류호정

배진교 · 심상정 · 이은주

강민정 • 이상민 • 이소영

이수진(비) 의원(10인)

제안이유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하여 최근 이상기온, 자연재해,생태계 파괴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사업의 추진, 에너지전환과정에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됨.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휘발유·경유·유연탄·무연탄·중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각 화석연료 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 는 세율을 과세하는 「탄소세법」이 마련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통해 추가 세입을 확보하여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및 신 규 일자리 창출, 전환과정에서의 노동자 지원, 탄소세 부과에 따른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 지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탄광 지역과 같은 경제·사회 여건이 악화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기금의 조성은 탄소세 및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3 조).
- 다. 기금의 용도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한 노동자 지원,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 지급, 지역사회의 원할한 전환 및 피해 지원, 경제·사회 여건이 악화된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탈탄소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마.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0호)과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 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증가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발생하는 실업 및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날씨의 극단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한파,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 2. "탈탄소"란 에너지 효율 혁신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화석 연료 의존 탈피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순배출을 '영(零)'으로 만 드는 것을 말한다.
-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

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4.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5.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수요관리를 촉진하고, 화 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6.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 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사회나 산업의 노동자·농민·중소 상공인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탈탄소사회 전환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 7. "탄소세 환급금"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보는 계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휘발유 및 경 유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 정부의 출연금
 -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 7.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사용한다.
 - 1.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 2. 탈탄소 사회 실현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 지급 및 지역사회 지원
 - 3. 탈탄소 사회 실현 과정에서 경제·사회 여건이 악화된 지역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탈탄소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 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정의로운전환기금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지원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지원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 지 못한다.
 - ②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 1.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 4.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지원받을 수 없다.
-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있다.
 - ②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